

DDA 농업협상, 11월 협상 동향

제27차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지난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11월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회의에서 1차 논의되었던 주제들에 관해 심층 논의가 이루어졌고 11월 1차 논의 주제에 관해 각국이 자신의 입장으로 처음으로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협상 진행방식과 논의 주제 선정에 관해 논의하여 향후 협상 진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1. 주제별 심층 논의

1.1 비종가세의 종가세 상당치 전환

향후 tiered formula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작업으로서 각국은 비종가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의 구체적인 방식 으로서는 수입단가방식(Unit Value Formula)과 수익기준방식(Customs Revenue Formula)이 있으며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것을 이용할 것인가를 놓고 회원국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또한 관세감축공식과 AVE 전환방식에 대한 논의 중 어떤 것을 먼저 논의해야 하는가에 관해 그룹별로 견해차를 보였다. 케언즈그룹 및 G20은 관세감축공식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AVE 산정방식을 논의하여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으나 수입국 그룹인 G10은 관세감축방식이 정

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AVE 산정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반발하였다.

일부 국가들 AVE 산정과 관세단일화를 연계하여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G10은 AVE 산정은 관세감축공식을 이용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관세 단일화와는 별도의 과정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통한 비종가세의 폐지에 반발하였다.

위의 쟁점들과 함께 수입실적과 관련된 자료의 객관성 및 in quota/out quota 실적 사용의 선택 등에 관해 논의하여 종가세 상당치 전환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1.2. 그린박스 기준 검토

금번 회의에서는 기본골격에서 언급된 그린박스의 기준 재검토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린박스의 기준에 대해서 건강검진 수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EC 및 G10에 반해 케언즈, G20 등 수출국 그룹은 그린박스 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다.

먼저, 브라질은 G20을 대표하여 그린박스에 무역왜곡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각종 보고서와 자료 등에서 제시되어 있다고 밝히고 농업협정 부속서 2에 나와 있는 그린박스 기준 자체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행 그린박스가 농민들에게 보조금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등 생산과 무역에 왜곡효과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페루는 일부 국가들이 그린박스를 규제대상인 AMS를 옮기기 위한 대체보조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며 비연계보조(decoupled payment)가 실제로 농가에 대한 안전장치로 작용하고 있음으로써 생산규모를 유지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EC는 현행 그린박스의 기준은 무역왜곡적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린박스가 증가하는 것은 농업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그린박스에 있어 NTC의 중요성과 환경 등의 사회적 목표 달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우리나라는 우리 정부가 AMS 대신 그린박스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농업계에 겨우 설득시키고 양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린박스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농업 개혁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3. 수출국영기업(STEs)

각국은 수출국영기업(Exporting State Trading Enterprises)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규율을 설정해야 할 목적과 기본 접근방향, 무역왜곡적 관행의 정의 및 감축을 위한 세부원칙 마련에 대해 논의하였다.

1.4. 식량원조

식량원조와 관련하여 각국은 인도적인 목적의 식량원조와 상업적 원조를 구분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으며 이에 관한 정의와 규정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11월 특별회의 1차 논의

2.1. TRQ 관리

이번 특별회의에서는 TRQ 관리방식과 Underfill 문제를 연계하여 논의하였는데 TRQ 소진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수출국 그룹은 TRQ가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보다는 시장접근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TRQ 관리방식의 문제로서 현행 TRQ의 소진율이 낮은 것

이 그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EC 및 G10은 현행 TRQ의 소진율이 낮은 것은 관리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in quota 물량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거나 국내 공급량이 많은 등 수급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2.2. TRQ 증량

TRQ 증량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는 증량기준을 현행 국내소비량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TRQ 증량을 여타 시장접근 분야의 이슈와 분리하여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논의시점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TRQ 증량은 민감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며 기본골격 합의안에서는 증량 수준을 관세감축공식으로부터의 이탈 정도를 감안하여 정한다고 명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2.3. 열대농산물

열대농산물 교역에 매우 높은 관심(offensive interests)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중남미 국가들은 개도국에 있어 열대농산물 교역의 자유화가 자국의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열대농산물에 대한 선진국의 관세감축과 S&D 부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4. 품목특정 AMS 상한 설정

각국은 품목특정 AMS가 블루박스에 대한 논의와 연계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G20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였다.

- ① 모든 회원국들에 단일 기준기간을 적용할 것
- ② 이행기간 중 각 품목에 대한 회원국의 보조실적 활용할 것
- ③ AMS가 없는 개도국에게는 어느 정도의 신축성 인정
- ③ 동 상한 설정을 통한 회원국의 의무회피(circumvention) 방지

스위스는 이에 관해 2004년 8월 1일 이전에 통보된 실적을 이용할 것을 제안했으며 품목특정 AMS가 de minimis 보다 낮은 수준이거나 품목특정

AMS가 없는 경우에는 품목별 생산액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정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와 뉴질랜드 및 미국은 기준기간 설정이 매우 민감하고도 중요한 사항임을 인정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였다.

2.5. 국내보조 기준년도 설정

품목특정 AMS 상한 설정 문제와 같이 국내보조의 기준년도와 관련하여 각국의 발언은 기본적인 원칙을 언급하는 데에서 그쳐 다음 특별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3. 기타 협상 진행방식 및 의제 선정

마지막 공식회의에서는 협상 진행방식 및 논의 의제와 관련하여 의장의 의견을 제시하고 각국의 반응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의장은 협상을 3단계로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1차 논의단계, 기술적 협의 단계, 소규모그룹 기술적 협의 단계로 구성되며 특히 기술적 협의 단계에서는 의제에 관한 심층논의를, 소규모그룹 기술적 협의 단계에서는 초안 작업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세부원칙 배포와 관련하여 배포시기를 막판까지 미루는 것은 협상의 중요 요소인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 국가의 입장을 반영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배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일부 국가들은 논의 주제가 많은데 비해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논의 주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의장은 기본골격에 언급

된 모든 사안들은 빠짐없이 다루어져야 하며 시간적인 제약은 인정하나 현행 협상진행방식을 고수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회의 말미에서는 참석국들이 회람된 면화소위원회 발족(안)에 대해 동의를 나타냄으로써 면화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관련 당사국들은 의장으로 서 그로서 현 특별회의 의장을 추천하였으며 그로서 의장은 이에 대해 수락 의사를 표명하였다.

의장은 2005년 2월부터 7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의 특별회의 일정을 발표하였다.

- ① 2.7(월)~2.11(금)
- ② 3.14(월)~3.18(금)(16일 정례회의)
- ③ 4.13(수)~4.15(금), 18(월), 19(화)
- ④ 5.30(월)~6.3(금)(6.2(목) 정례회의)
- ⑤ 7.11(월)~7.15(금)

4. 향후 협상전망

이번 11월 특별회의는 기본골격 합의 이후 두 번째 회의로서 몇 가지 기술적인 쟁점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는 등 전반적으로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유보된 듯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특히 AVE 산정방식이나 국내보조 감축/상한 기준을 조화방식으로 감축할 것에 대비하여 최대한 유리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별로 신경전이 벌어졌다.

또한 호주 및 캐나다와 G20은 모델리티 협상 타결을 서두르는 반면 미

국과 EC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하는 등 협상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2005년 7월까지의 특별회의 일정이 발표된 데 이어 그 사이의 임시회의도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고 의장이 제시한 3단계 협상 진행방식이 확정되어 협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월에 있을 특별회의(12.13~12.17)에서는 11월 협상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에 대해 좀더 심도 있게 다룰 것이며, 특히 시장접근 분야(TRQ 증량, 민감품목, SP, SSG, SSM 등)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국내보조 분야에서는 11월 협상에 이어 그린박스의 기준에 대해 재검토하고 기본골격 합의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블루박스의 지급요건에 관해 다루도록 되어 있어 국가별로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임소영 lsyjr@krei.re.kr 02-3299-42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